<u>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</u> 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주식회사 아이티아이즈 (이하 "을"을 이라 한다.)는 "네이버클라우드기반 머신러닝 환경구성 및 검증용역" (이하 연구라 한다)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계약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같다.

제2조 (범위)

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, "을"이 연구 완료 후 [©] ("갑"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목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.

제3조 (기간)

본 계약의 기간은 <u>2019년 12월 1</u>일부터 <u>2019</u>년 <u>12월20</u>일까지 <u>20</u>일로 하며, "갑"과 "을"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 (연구비)

본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**금 일천삼백만원 정 (₩**13,000,000) 부가세 또는 포함으로써, "갑"은 다음과 같이 "을"에게 지급 한다.

- 1) 선금(50%) : 6,500,000 원정.(2019 년 12 월 10일까지)
- 2) 잔금(50%): 6.500,000 원정.(2019 년 12 월 25일까지)

제5조 (지체상금)

"을"이 본 계약에 따른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일수 당 전체 계약금액의 1.25 /1,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"갑"에게 지급해야 한다.

제6조 (연구보고서 제출)

"을"은 연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본 연구결과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"갑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구 중간보고서는 양자 합의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제7조 (연구결과의 귀속)

본 연구결과(Know-How 및 본 연구결과로 기대되는 특허권 포함)는 그 성질상 "갑"의 과학기술축적에 따른 결과로 보아 "갑"의 소유로 하되, 그 기술에 대하여 "을"은 우선실시권을 갖는다.

제8조 (기술의 실시)

- ① "을"은 "갑"에게 제6조의 기술을 실시할 경우에는 "전용실시권"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하에 "통상실시권"을 제시할 수 있다. 기술실시 및 기술료 지불에 대하여는 상호신의아래 새로운 기술실시 계약을 채결한다.
- ② "을"은 제3자에 우선하여 "갑"에게 기술실시에 관한 계약체결을 제안하여야 한다.
- ③ "갑"이 1개월 이내에 그러한 제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"을"은 제3자와



제9조 (신의성실 및 상호협조)

- ①(신의성실) "갑"과 "을"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(상호협조) "을"은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"갑"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"갑"과 협의하여야 하며, "갑" 또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로 연구 요한 사항을 "을"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(규정준수) "갑"이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, 재료, 기자재 및 시설등을 출자하 등 는 경우에는 "을"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 (비밀보장)

"갑"과 "을"은 상호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 조항은 상호 일반적인 기업활동이나 연구활동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제11조 (연구결과 발생되는 물품의 귀속)

- ①(귀속)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시작품은 "갑"의 소유로 하고, 발생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"을"의 소유로 한다.
- ②(인수)"갑"은 제1항의 시작품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연구 완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주하여야 하며, 동 기간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"을"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인수를 최고하고, "갑"이 그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
- ③(제세공과 및 인수비용) "갑"이 제1항의 시작품을 인수하는 경우에 동 시작품에 부과되는 제세공과와 인수비용은 별도로 "갑"이 부담하여야 한다.

제12조 (명칭사용)

"갑"은 본 연구로 취득한 정보를 "을"의 사전 서명 승인없이 본 연구의 목적과 무관하게 광고, 판매촉진,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 며,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"을"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3조 (권리양도의 제한)

"갑"과 "을"은 상호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제반권리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
제14조 (보호)

"갑"은 연구과정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담보책임, 소송, 고소로부터 "을"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. 단, "을"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일어난 경우에는 보호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.

제15조 (계약의 해지)

①("갑"의 해지) "을"이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, "갑"은

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"을"에게 해지의 의사를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본 계였으므로 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②("을"의 해지) "갑"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 고 인정될 경우 "을"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"갑"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 🗽 한 후 그 기간 내에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
- ③(해지협의) 본조 제1)항 및 제2)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"을"은 ****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시까지의 연구비 집행정산서 및 해지시까지 의 연구보고서를 "갑"에게 제출하고, 연구비의 미집행분에 한하여 "갑"에게 반 •••
- ④(기타)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"갑"과 "을"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.

제16조 (중재)

계약기간중 또는 계약종료 후 본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의 효력, 또는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양자간의 분쟁이 발생했을때에는 그 분쟁은 중재에 의해 해결한 Ct.

제17조 (계약의 변경)

"갑"과 "을"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8조 (계약의 효력)

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.

제19조 (해석)

皇子問句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의 합의 또는 통상의 관행에 따른다.

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(또는 서명)하고 "갑"과 "을"이 각각 1부 씩 보관한다.

유 첨: 과업지시서 1부

2019 년 12 월 02일

"감"

"읔"

주 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주 소 :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, 5층

기관명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

기관명: (주)아이티아이즈

대표자 विशेषीयिक सेक्षेब्रेचिस्य **ोर्**क्षिय)

대표자: 이성님

연구책임자 : 한 희 선생 ()

問題問意

